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시행 2023. 7.31.]

(제정) 1996.03.01 규칙 제82호
(일부개정) 2000.11.21 규칙 제247호
(일부개정) 2002.04.01 규칙 제305호
(일부개정) 2003.12.27 규칙 제352호
(일부개정) 2004.12.17 규칙 제394호
(일부개정) 2005.10.05 규칙 제442호
(일부개정) 2008.10.08 규칙 제566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 2010.03.15 규칙 제602호
(일부개정) 2012.06.14 규칙 제678호
(일부개정) 2015.11.13 규칙 제810호
(일부개정) 2017.06.05 규칙 제875호
(일부개정) 2018.04.12 규칙 제907호
(일부개정) 2019.11.25 규칙 제985호
(일부개정) 2019.12.23 규칙 제98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7.31 규칙 제111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 : 자치분권과

연락처: 031-324-30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4, 2017. 6. 5>

제2조(임용자격) ① 통장·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1. 신설 통·리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지역
- ② 삭제 <2012. 6. 14>

제3조(통장·이장의 임명) ① 읍장·면장·동장이 통장·이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② 주민추천방법은 해당 통·리 세대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③ 제2항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에는 후보자는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에게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 6. 5>

④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⑤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⑥ 제5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은 직권으로 통장·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5>

⑦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장·이장을 재임명할 경우에도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5>

[전문개정 2012. 6. 14]

[제목개정 2015. 11. 13]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①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이장으로 임명하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통장·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② 면접위원회는 해당 읍장·면장·동장과 해당 읍·면·동의 지역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해당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③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 <신설 2017. 6. 5, 2019. 11. 25>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6. 5, 개정 2019. 11. 25>

⑤ 각 후보자별 면접심사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17. 6. 5>

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제5조(임기) ① 통장·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통장·이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6항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③ 삭제 <2017. 6. 5>

제6조(통장·이장의 해임) ① 통장·이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해임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통장·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1.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해당 통·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때

5.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때

6. 읍장·면장·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면·동 행정에 불성실할 때

7.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위배한 때

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 직권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5년간 통장·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 11. 13, 2019. 11. 25>

[제목개정 2015. 11. 13]

제7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이장 임명(해임) 대장을 작성하며, 통장·이장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② 삭제 <2017. 6. 5>

③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 임명 후 읍·면·동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임명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제8조(신분증 발급 등) ①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이장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

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14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5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5 규칙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장.이장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장.이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장.이장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된 통장.이장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 <2019. 12. 23 규칙 제98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및 제9호다목 중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23. 7. 31 규칙 제111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